고령화 사회와 금융의 역할 토론

- 제 2주제 중심-

2012. 1.26

류 건 식

(선임연구위원)

- 1990년대 OECD,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고령화 대비 권고
  - 선진국 :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령화 대비 (연금개혁 등)
  - 한 국 : 2000년대 들어 고령화의 심각성 인식

- 고령화 문제는 최대 당면 과제로 보험의 역할 중요 (고령화 빅뱅)
  - 고령화 리스크 대응을 위한 개인, 금융, 정부간의 유기적 역할 긴요
  - 보험의 역할은 보험사 자체 노력과 정부 지원 하에서 극대화

- 주체별로 고령화 리스크 조망한 후 보험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
  - 발표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
  - 발표내용에 대해 첨언(추가설명)하고 몇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제시

1. 고령화 리스크 대응을 위한 로드맵 설정 필요

❖ 정부의 재정 리스크를 고려한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체계 정립

일부 대체	전부 대체	적용 제외(contract out)
덴마크, 네덜란드, 핀란드, 스위스 등	칠레 등	일본, 영국

❖ 공적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설정

➢ 이 보장수준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(또는 개혁) 필요

3층 개인연금	10 ~ 20%
2층 퇴직연금	30%
1층 공적연금	30%

World Bank 등 국제기구 권고안: 70 ~ 80%

개인연금	7.5%
퇴직연금	12.5%
국민연금	35%

우리나라의 실질소득대체율 : 55%

주: 보험연구원(2009)

2. 보험사의 장수 리스크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정부지원

❖ 사전에 보험사 장수리스크 관리능력배양->개인의 장수리스크헤지유도

➢ 세제혜택 및 사적연금 가입의무화, 장기국채 확대 등 인프라구축

보험사 장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역할(보험사 설문조사 결과)

구분	응답(%)
사망률표 질 향상	17.0
장수채권시장 형성	6.4
장수스왑 활용	6.4
수명연장 인식 확산	12.7
은퇴 후 금융상황 정보전달	2.1
금융교육 지원	4.2
장기국채 확대	21.2
세제혜택 및 가입의무화	21.2
적정한 연금규제	8.5

주: 보험연구원(2011)

3. 연금 전환 등으로 사적연금 풀 확대

❖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 일원화

- ➢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와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 일원화 추진
- ➢ 소기업-> 중소기업-> 대기업 순으로 단계별 추진

❖ 점진적으로 사적 연금제도 가입의 의무화

- ➢ 사적연금 가입을 일부의무화하거나 강제화 검토(일시금과 연금세제차별화)
- ➢ OECD국가 중 12개국이 사적연금 가입의무화

사적 연금 가입의 의무화 국가

구분	국가명
오세아니아(2개국)	호주, 뉴질랜드
유럽(9개국)	덴마크, 헝가리, 아이슬란드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슬로바키아, 스웨덴, 스위스
미주(1개국)	멕시코

❖ 사적연금 가입 의무화 등으로 연금 풀 확대 유도

➢ 정부와 국민의 장수 리스크 헤지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장수리스크 헤지

연금수령 풀(**pool**) 확대의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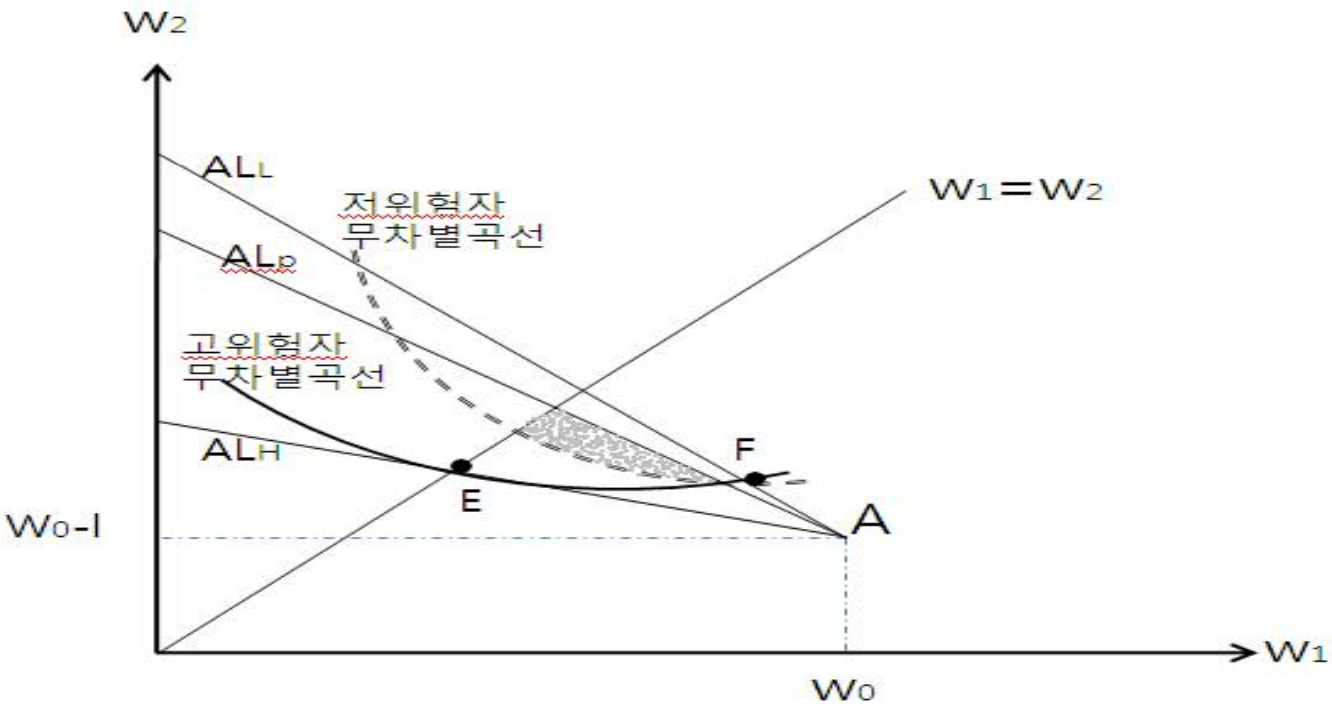

4.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세제 혜택 부여

❖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제의 이원화, 소득공제의 상향조정

➢ 별도의 퇴직연금 소득 공제 신설 등

❖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단계적 축소

➢ 반면 연금소득공제 한도 조정, 연금수령시 근속연수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

퇴직 일시금 관련 세제 개선

구 분	현 황	개 선
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	30% (2016년까지 단계적 축소예정)	폐지기간 단축
퇴직연금수령 시 소득공제한도	900만원	연금소득공제 1200만원 이상으로 조정
기존퇴직금 소득공제 한도	40%	매년 10%씩 공제비율 축소.폐지
퇴직금의 퇴직연금전환 시 세제혜택	별도규정없음	- 퇴직연금 도입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 - 기존 퇴직금을 IRA에 예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

❖ 소득계층별 연금세제의 차등화

- 가입자 특성(연령별, 가입자별, 소득별)을 반영한 연금세제 차등화
- 연 령 별 차등화 (예: 미국, 호주 등) : 50대미만, 50대 이상 등
- 가입자별 차등화(예: 일본, 미국 등) : 근로자, 자영업자 등
- 소득계층별차등화(예: 독일, 영국 등) : 저소득계층, 고소득계층 등

5. 고령친화 연금상품 개발 등에 적극적 노력 필요

- 개인의 장수 리스크 관리자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 연금보험중심의 상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
  - 예: 건강보험 가미형 DC형 및 IRA형 상품개발, 일시납 즉시연금 활성화, 강화형 연금상품, 고연령 거치 연금 등

사적연금 가입률

	영국	미국	독일	한국
퇴직연금	49.1%	32.8%	32.2%	18.8%
개인연금	18.1%	24.7%	29.9%	12.2%

출처: OECD(2011)

- DC형과 연계된 은퇴시점 수입보증형 상품(예: Quaranteed Income for Life , Income Flex) 등 설계 필요(단,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노출 고려)
  - 적립기간동안 수입보증옵션을 부가하는 등 DC형 퇴직연금내 수입보증형 상품의 설계가 장수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검토
  -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, Prudential 사례 참조

6. 노후대비를 위한 실질 수익률 제고 및 제도보완

-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증대 필요
  - 예: 투자수익률 3% 증가 ->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16.8% 증대
- 국제회계기준 도입, 연금자산운용규제 완화 등 고려, 자산운용전략의 전환(예: 부채중심 배분전략)

부채중심 자산 배분

구 분	전통적운용	부채중심 자산배분
목적	장기운용 고수익 모든 기간 동안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며, 비용의 최소화 가능	부채를 중심으로 한 투자를 행하여 적립잉여 및 적립 부족을 통제
리스크 측정	목표수익률을 해당부문의 지수 또는 S&P500과 같은 대표지수와 연계하는 등 자산의 변동성만 고려	외부 지수와 연계하지 않고, 연금계리사가 평가한 연금펀드의 부채와 연계하는 등 연금채무 변화에 대응한 펀딩 비율의 변동성을 고려
전략	전략적 자산배분	부채 중심의 자산배분

  -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에 연금 ALM 관리 명문화 (영국, 독일, 일본 법제화)
- 또한 연금 수익률 확보를 위해 현행 운용수수료의 탄력적 적용(수익률을 고려한 수수료 차등화 등) 검토

7. 건강보험 및 기타

❖ 건강보험

- 노후불안 원인 소득 및 건강
- 지출측면의 건강복지에 대한 연구는 소득(연금)에 비해 미흡
- 건강복지를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
- 특히, 의료시장에 대한 비효율성 및 보험회사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

❖ 기타

- 소득 및 건강 이외의 분야에 대한 보험의 역할도 다양하지만 연구 미흡
- 노동, 교육, 가족관계 측면 등